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180 발의연월일: 2022. 12. 27.

발 의 자:김승수·박성민·지성호

구자근 · 김석기 · 최영희

박대수 · 태영호 · 김성원

주호영 • 박덕흠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청소년 보호법」의 기준에 따른 연소자 유해 공연물을 연소자에게 관람시킬 수 없고, 선전물의 배포나 관람을 권유 하는 광고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연소자는 18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과 달리「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어, 서로 다른 연령 기준을 적용함에 따른 법률 적용과 집행의 혼란의 문 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연소자를 청소년으로 변경하고, 청소년의 기준을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으로 규정함으로써 청소년 보호체계의 일관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등).

법률 제 호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제5조의 제목 "(연소자 유해 공연물 등)"을 "(청소년 유해 공연물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연소자"를 각각 "청소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연소자"를 "청소년"으로 한다.

제31조제1호 중 "연소자"를 "청소년"으로 한다.

제32조 중 "연소자"를 "청소년"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제1호 중 "연소자"를 "청소년"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 제2조(정의) |
|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 6. "연소자"란 18세 미만의 사 | 6.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 |
| 람(「초・중등교육법」 제2조 |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 |
| 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 | <u>년을 말한다.</u> |
| 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 | |
| <u>다.</u> | |
| 제5조(연소자 유해 공연물 등) ① | 제5조(청소년 유해 공연물 등) ① |
| 누구든지 「청소년 보호법」 | |
| 제9조의 기준에 따른 <u>연소자</u> | <u>청소년</u> |
| 유해 공연물을 <u>연소자</u> 에게 관 | <u>청소년</u> |
| 람시킬 수 없다. |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③ 공연자는 「영화 및 비디오 | 3 |
| 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 | |
| 른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위 | |
| 원회"라 한다)에 제1항의 공연 | |
| 물 및 제2항의 선전물의 <u>연소</u> | <u>청</u> |
| <u>자</u> 유해성 여부에 대하여 확인 | <u>소년</u> |
| 을 요청할 수 있다. | |
| 제31조(공연자 또는 공연장의 감 | 제31조(공연자 또는 공연장의 감 |
| 독)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 독) |

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 여금 공연자나 공연장운영자의 장부 및 서류를 검사·열람하 게 할 수 있다.

 제5조에 따른 <u>연소자</u> 유해 공연물에 관한 사항

2. ~ 8. (생략)

제32조(폐기명령 등) 특별자치시 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 수・구청장은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확인을 받지 아 니한 선전물이 <u>연소자</u>에게 유 해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 의 확인을 받아 그 제작자와 제작을 의뢰한 자에게 그 선전 물을 수거하여 폐기할 것을 명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수거 ・압류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수수료) ① 위원회나 안전 진단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 를 받아 수수료 등을 받을 수

| 1 <u>청소년</u> |
|------------------|
| |
| 2. ~ 8. (현행과 같음) |
| 제32조(폐기명령 등) |
| |
| |
| |
| <u>청소년</u> |
| |
| |
| |
| |
| |
| |
| |
| 제39조(수수료) ① |
| |
| |
| |

있다.

- 1. 제5조제3항에 따른 <u>연소자</u> 유해성 확인
- 2. · 3. (생략)
- ② (생 략)

1. -----<u>청소년</u>--

- 2. · 3.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